

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(문진석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7680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3. 23.

발 의 자 : 문진석 · 박용갑 · 박상혁
허영 · 김기표 · 김주영
박정현 · 이주희 · 박정
김윤 · 전용기 · 최혁진
복기왕 · 이춘석 · 이정현
의원(15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용산공원정비구역이 지정·고시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수립된 종합기본계획에 기초하여 용산공원조성지구에 관한 조성계획(이하 “용산공원조성계획”이라 함)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한편 용산공원정비구역에서 관련 협정에 따라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게 반환하기로 한 공여구역 중 일부에 해당하는 면적(약 30%)은 반환이 이루어졌지만, 나머지 공여구역은 오염된 부지에 대한 정화비용 부담 등에 대한 이견으로 반환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임.

이에 따라 용산공원정비구역 전반에 대한 용산공원조성계획 수립 및 조성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일부 반환된 공여구역을 대상으로 용산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부지에 대해서 조성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용산공원정비구역에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 반환하지 않은 공
여구역이 있는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구역을 제외한 용산공
원정비구역에 대하여 용산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
것임(안 제14조제1항 후단 신설).

법률 제 호

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용산공원정비구역에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 반환하지 아니한 공여구역이 있는 경우 해당 구역을 제외한 용산공원정비구역 일부에 대하여 용산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